

# 중국의 도시녹지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특성

신익순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 The Characteristic of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in China

Shin, Ick-So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onam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hinese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and analyzed the specificities of them intending to provide basic data to suggest bringing in or not the relevant Chinese Laws to Korea.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Chinese urban green spaces(g.s.) classified by 5 kinds(park g.s., production g.s., protection g.s., attachment g.s., the others g.s.) placed the park and green spaces in the same category unlike the Korean urban green spaces that only distinguishes between park and green spaces. The Chinese Urban Park is classified by 4 kinds(composite park, community park, special park, linear park) at the 'Standard for urban green spaces classification' which is below in rank of the legal system.

Second, in case of calculation for green spaces ratio of urban green spaces in China, the green rooftop landscaping area should not be included as a green spaces area except the rooftop of a basement or semi basement building to which residents have easy access. The green spaces requirements and compulsory secure ratio by 3 habitat kinds(habitat, small habit, minimum habitat) of when to act as a residential plan is regulated.

Third, the green spaces system is obligated to establish at habitat green spaces plan and is specified to conserve and improve existing trees and green spaces. The green spaces ratio on reconstruction for old habitat is relaxed to be lower than for new habitat and a gradient of green spaces is peculiarly clarified. The details and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and the minimum area intending for each classes of the central green spaces(habitat park, children park, minimum habitat's green spaces) are regulated. Especially at a garden style of minimum habitat's green spaces, interval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houses and a compulsory security for green spaces area classifying into two groups(closing type green spaces and open type green spaces) by a middle-rise or high-rise building are clarified. System of calculation for green spaces area is presented at a special regulation.

---

**Corresponding author:** Ick-Soon Sh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onam University, Gwangju 506-714, Korea, Tel.: +82-62-940-5503, E-mail: [isshin@honam.ac.kr](mailto:isshin@honam.ac.kr)

Fourth, a general index(area/person) of public green spaces within habitat to achieve by 3 habitat kinds is determined, in this case, the index on reconstruction for a deterioration zone can be relaxed to be lower to the extent of a specified quantity. A location and scale, minimum width and minimum area per place of public green spaces are regulated. A space plot principle including adjacent to a road, greening area ratio against total area, security of open space and the shadow line boundary of sunshine are also regulated to intend for public green spaces.

Fifth, the minimum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underground cables and the surrounding greening trees are regulated as the considerable items for green spaces when setting up the underground cables. The principle to establish green spaces within public service facilities is regulated according to the kind of service contents.

It shall be examined in order to import or not the special regulations that only exist in Chinese Laws but not in Korean Law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gain the domestic landscape architect's sympathy of the research related to Chinese urban green spaces laws requiring immediate attention and will be a good chance to advance in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al Laws.

*Key Words: Park Green Spaces, Public Green Spaces, Urban Park, Greening Spaces Ratio*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 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고찰함으로써 향후 이들 법규의 국내 도입 여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상이하며,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공원의 종류는 하위 법규인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옥상조경 시 중국에서는 주민 출입이 용이한 지하나 반지하 건물의 옥상 외에는 옥상조경의 조경면적을 도시녹지의 녹지율 산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거주구 계획·설계 시의 녹지 요구 조항과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등 거주구 종류별 의무적 공공녹지 확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거주구 내 녹지계획 시 녹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존 수목과 녹지의 보존·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녹지율은 거주구 재정비시의 경우 신거주구 건설시보다 완화시켜 주고, 특이하게 녹지 경사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거주구공원, 어린이공원(小遊園), 조단(組團)녹지 등 각급 중심녹지의 설치 내용, 요구사항 및 최소 면적 규모가 명시되어 있고, 특히 조단녹지의 일종인 정원식 조단녹지는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하여, 다층·고층 건물별로 남·북측 건물 간격과 녹지 면적 확보치를 밝히고 있으며, 녹지 면적 계산법이 별도의 규범에 제시되어 있다.

넷째, 거주구별 달성해야 할 거주구 내 공공녹지의 1인당 확보 면적인 총 지표가 정해져 있고, 이 경우 노후 구역 재정비시에는 일정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녹지의 위치와 규모, 최소폭, 개소당 최소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고, 도로와의 인접, 전체 면적 대비 녹화 면적비, 개방적 공간 확보, 일조음영선 범위 등 공간 배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지하관선 설치 시의 녹지 고려 사항으로 지하관선과 주변 녹화수목과의 최소 수평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고, 공공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를 위해 종류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녹지 설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 규정에는 없는 중국 법규만의 특이점에 대한 국내 도입 여부를 검토가 향후 요구되고,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국의 도시녹지 관련 법제도 연구의 당면성에 대한 국내 조경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조경 법제도의 국제화 진입의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공원녹지, 공공녹지, 도시공원, 녹지율

## I. 연구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한반도 기후온난화에 따른 각종 공해 속에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는 도시녹지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국내의 녹지 관련 법제도를 재정립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개선·보완 작업이 절실한 현재, 외국의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필요시 국내 법령에 접목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조경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 시 당면하게 될 관련 법 제도 연구의 상호 교류 역시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각국이나 일본 등지의 관련 법규에 대한 접근은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지만, 이웃 나라인 중국의 녹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접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사회주의 헌법의 근간 아래 21세기 국가경제 발전과 주민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현 중국 대륙 내의 신흥 도시지역의 녹지 정책은 최근 국가 차원에서 계획적·전략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제도 역시 체계화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조만간 국제사회에서 조경 분야의 학술적 협력자로 접촉하게 될 중국 원림학자들과 실무자들의 녹지 법제도에 관한 인식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과의 협력 체제를 준비·유지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국민들의 보수적 사고방식과 지방행정 집행 시 다소 통제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한국인의 학술적 접근이 타국에 비해 비교적 어려운 중국 내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내 조경가들에 의한 중국 조경 관련 법제 연구 역시 미비하다. 최근 한중일 삼국의 조경학술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에 관한 상호 연구 교류는 미비한 편이며, 특히 일본에 비해 중국과의 법령 연구에 대한 교류는 전무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처럼 조경면적을 의무화시키고 있는 '대지의 조경' 규정이 없는 중국의 조경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의 선행 작업으로 우선 조경행위의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 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 1. 중국의 건설 법령 종류 및 제정 주체

-	법률	조례	관법(辦法)	규정/통칙	표준규범			중요문건	
					표준	규범			
제정 주체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국무원	시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건설부	건설부	국가	건설부	건설부	건설부
법령 위상	법률	령	통과	건설(建城)	령, 공고	국가표준	건표(建標)	건표(建標)	통지, 의견

## II. 이론적 고찰

### 1. 중국의 녹지 관련 법령 일반

국내 법 체계의 위상은 그 제정 주체에 따라 위로부터 국민에 의한 헌법, 국회에 의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지방자치 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으로 구분되며, 중국의 경우에는 인민에 의한 헌법,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의한 법률, 국무원과 각 시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의한 조례, 행정부에 의한 판법과 규정·통칙, 국가에 의한 표준, 행정부인 건설부에 의한 규범과 중요문건 등의 순서로 구분된다(표 1 참조). 헌법, 법률까지는 그 위상이 국내와 유사하나, 국내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시행령이 중국에서는 시인민대표회의 위상인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 특이하다. 국내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행정부 위상의 규정 상위에 조례보다 하위인 판법이라는 법규가 존재한다. 중국의 녹지 관련 법규는 후술하는 것처럼 법규 체계상 국내보다 낮은 위상으로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에서 건축 행위 시 도시녹지 확보의 근간이 되는 식재를 비롯한 의무적인 조경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총 85개 조로 구성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에서는 조경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회법 차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 녹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와 달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법률 차원에서 도시녹지를 직접 규정하는 법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공원녹지와 도시녹화를 위해 필요한 계획 원칙, 동식물 및 환경 보호 등 도시녹지와 간접적으로 상관되는 법률은 다수 존재하며, 이하 시별 공원조례, 도시녹화조례 등 국무원에서 처리하는 각종 관련 조례 및 건설부에서 발하는 각종 판법(辦法)과 규정·통칙이 존재한다. 기타 일반적 하위 규범으로 표준규범과 중요문건이 있다. 중국에서의 녹지 관련 법령을 종류별로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이 중 '민용건축설계통칙'상 녹화 배치 방식 결정 시의 도시기후 고려가 필수적인 바(동통칙 5.4.1-2), 남한 면적의 98배인 약 960만km<sup>2</sup>의 넓은 중국 대륙은 특이하게 전국을 I<sub>A</sub>~I<sub>D</sub>, II<sub>A</sub>~II<sub>B</sub>, III<sub>A</sub>~III<sub>C</sub>, IV<sub>A</sub>~IV<sub>B</sub>, V<sub>A</sub>~V<sub>B</sub>, VI<sub>A</sub>~VI<sub>C</sub>, VII<sub>A</sub>~VII<sub>D</sub> 등의 지역으로 구분한 '중국건축기후구획도'(건축기

표 2. 중국의 녹지 관련 법령 일람표

법령 종류	해당 법령명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시농촌계획법/문물보호법/환경소음오염방지법/안전생산법/환경보호법/삼림법/출입국동식물검역법
조례	중화인민공화국야생식물보호조례/매장관리조례/도시녹화조례*/풍경명승구조례/북경시공원조례
판법	도시녹선(綠線) 관리관법*/국가중점공원관리관법/도시노거수보호관리관법/국가도시습지공원관리관법
규정	도시동물원관리규정/위락원(遊樂園) 관리규정/옥상식재공정기술규정
통칙	민용건축설계통칙
표준	도시원림녹화평가표준*/도시녹지분류표준*/국가원림도시표준/국가생태원림도시표준/원림기본술어표준/북경시도시원림녹화보호관리표준*/광둥성 도시녹지보호품질표준*/주택성능평정기술표준/풍경명승구분류표준
규범	공원설계규범/도시거주구계획설계규범*/도시녹화공정시공 및 검수규범*/원림수목보호기술규정규범/도시도로녹화계획·설계규범*
통지	도시녹지 건설강화에 관한 국무원 통지*/도시생물다양성 보호업무강화에 관한 통지
의견	공원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절약형 도시원림녹화에 관한 의견*

\*: 도시녹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법령

후구획표준, GB 50178-93 부록 도면 2.1.2)가 제정되어 녹지 조성에 활용되고 있다.

## 2. 연구사

신익순(1997)이 국내·외 조경 관련 법제도 연구에서 해외 조경 법제도를 검토했으나, 주로 영·미를 포함한 유럽과 일본의 법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국의 관련 법규는 자연환경 분야에서 극히 일부만 언급했다. 이후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중국의 조경 관련 법제도, 그 중에서도 도시녹지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다. 다만 도시공원녹지 정책 및 현황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및 체계적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주거단지계획에 있어서 제일 큰 영향 요인은 문화에 앞서 정치와 경제이고, 공원·녹지가 단독·분리로부터 연결·기능으로의 변화 과정 즉, 공원녹지에 시스템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을 밝힌 중국 주거단지계획 제도 특성(사신우, 2010), 중국 중앙정부의 녹지정책 및 제도와 주요 도시의 녹화 사례(이양주, 2007), 북경시를 사례로 한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시 공원녹지 체계 조성책(곡소곤, 2008), 공원녹지체계의 수립으로 훼손·파괴되는 도시자연환경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상해시 포동신구의 공원 녹지체계의 분석(채문의, 2009), 중국 하얼빈시를 대상으로 경관생태적 접근을 통한 도시녹지 네트워크 계획(Lu Bo, 2011), 한국 청주시와 중국 엔타이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공원녹지 현황 및 시민의식 분석(장지엔웨이, 2012)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들로서 대상지를 모두 중국으로 한정하여 자국의 공원·녹지 현황 위주로 서술함으로써 한국과의 비교 분석이 부족하고, 한중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접근 역시 미비한 편이다. 향후 이들이 연구 범위를 국내 지역 및 현황을 대상으로 전환하여 연구할 수 있고, 아울러 중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한국의 공원·녹지 법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한·중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한 조홍하와 강태호(2011)는 한국과 중국의 옥상녹화 제도를 비교 연구하면서 중국의 관련 법규 및 지원제도상의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검토하였다. 2004년 개정된 일본의 도시녹지법과 도시공원법을 대상으로 개정 배경과 경위, 법체계 및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한 연구(강명수, 2005)가 있었으나, 중국에서의 도시녹지에 관한 법제도에 대한 국내 연구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현행 중국내 도시녹지의 분류에 따른 도시공원과 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중 공동주택 내 녹지 설치 규정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분류의 자료는 중국의 녹지 관련 법령(표 2 참조) 중 2002년 6월 3일, 중국 건설부 심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북경시 북임지 원림계획설계원 유한공사가 책임 편집한 '도시(城市)녹지 분류 표준'(표준 번호: CJJ/T 85-2002)의 표 2-1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또한 도시거주구 중 공동주택 내 녹지 설치에 관한 자료는 2002년 3월 11일, 최종 수정 공고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중 하나인 '도시거주구 계획설계 규범(城市居住區規劃設計規範)'(규범 번호: GB 50180-93)을 근거로 하였다. 이 두 법규를 대상으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도시녹지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녹지를 법적으로 분류하여 분류코드와 각 녹지의 내용 및 범위를 살펴보고, 한중 도시공원 종류를 비교하였다.

중국에서의 주거단지는 그 규모에 따라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등 3종류로 구분된다. 거주구란 광의의 의미로 국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

정에서의 도시지역 중 거주지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에 해당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주거지역을 규모별로 세 종류로 세분할 경우 가장 큰 규모인 거주구를 말한다. 도시거주구는 도시(城市)내 거주구를 말한다. 중간 주거단지 규모인 소구(小區)에 이어 조단(組團)은 집단 주거지(habitat)를 조성하는 최소 단위의 주거구역(minimum habitat)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계인 최소의 공동주택 거주구 즉, 한국의 다세대주택급 단지에 해당한다. 우리말 번역으로 최소구, 기본구, 기초구, 한계구 등의 용어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최종 번역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 본 논문에서는 원명인 조단(組團)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호수 기준으로 거주구는 10,000~16,000호, 소구(小區)는 3,000~5,000호, 조단(組團)은 300~1,000호 규모를 말하며, 기타 각각의 인구 규모와 공공녹지 확보율은 표 8과 같다.

도시거주구 녹지 설치를 위한 규정으로서 우선 대상 범규의 내용에서 그 정의에 녹지가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고, 거주구 계획 시 녹지 요구 사항을 검토하였다. 조단(組團)녹지는 조단(組團) 구역에 조성되는 녹지로서, 그 의미상 우리말 번역으로 뭉치녹지, 덩이녹지, 집단녹지, 조각녹지, 일단녹지 등의 용어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원명 그대로 사용하였다. 녹지 설치와 관련된 법규로는 녹지 설치 시의 일반원칙과 규정 준수 사항 및 중심녹지와 공공녹지 설치와 관련된 법규를 각급별 중심녹지 설치와 정원식 조단(組團)녹지 설치 규정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였으며, 지하관선 설치 시의 녹지 고려에 관한 규정

을 살펴보았다. 또한 녹지 종류별 녹지면적 확정과 공공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 규정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 내용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비 중국 법제도의 특이점을 분석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중국의 도시녹지 종류

###### 1) 도시녹지 분류

중국의 도시녹지의 종류는 공원녹지(G<sub>1</sub>), 생산녹지(G<sub>2</sub>), 방호녹지(G<sub>3</sub>), 부속녹지(G<sub>4</sub>) 및 기타녹지(G<sub>5</sub>) 등 5가지 종류로 대별된다. 국내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과 녹지가 분리되어 있고, 녹지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동법 제35조)되어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공원과 녹지를 통틀어 공원녹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분류에서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동법 제30조 제4호)하고 있는 바, 지역 개념의 분류인 생산녹지지역이 중국에서는 녹지 개념으로서의 생산녹지로 분류된 점이 특이하다.

각 녹지별 대·중·소 분류 코드와 세부 분류 명칭, 녹지의 내용과 범위는 표 3과 같다. 녹지의 내용 중 집중녹지는 단지 내 건물로 둘러싸인 중앙에 조성되는 중심녹지에 비해 중앙, 외곽 지점에 상관없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녹지를 말한다.

표 3. 중국의 도시녹지 분류

분류 코드			분류명칭	내용 및 범위
대	중	소		
G <sub>1</sub>	G <sub>11</sub>		공원녹지	공중에 개방, 휴게기능 증대, 생태·미화·방재 작용을 겸비한 녹지
		G <sub>111</sub>	종합공원	내용 풍부, 유관시설 확보, 공중의 옥외활동을 위한 대규모 녹지
		G <sub>112</sub>	전시(全市)공원	전시민을 위한 서비스, 활동내용 풍부, 완전한 시설의 녹지
	G <sub>12</sub>		구역공원	일정 구역 시민을 위한 서비스, 비교적 활동내용이 풍부하고 어느 정도 완전한 시설을 구비한 녹지
		G <sub>121</sub>	공동체공원	일정 주거용지 범위 내 주민 서비스, 일정 활동 내용과 시설이 구비된 집중녹지
		G <sub>122</sub>	거주구공원	거주구 주민을 위한 서비스, 일정 활동 내용과 시설 구비, 거주구용으로 부설된 집중녹지
	G <sub>13</sub>		소구(小區)유원	소구 주민을 위한 서비스, 부설된 집중녹지
			전문(專類)공원	특정 내용 또는 형식 구비, 유희·휴게시설이 확보된 녹지
		G <sub>131</sub>	아동공원	단독 설치, 소년·아동에게 유희 및 과학보급 제공, 문화·체육 활동, 안전하고 완전한 시설을 확보한 녹지
		G <sub>132</sub>	동물원	인공 사육, 외부 반입 야생동물, 관광 제공, 과학 지식 보급, 과학연구 및 동물번식 진행, 양호한 시설을 구비한 녹지
		G <sub>133</sub>	식물원	식물과학 연구 및 품종 번식·순화 진행, 관광 제공, 유희·휴게 및 과학보급 활동을 위한 녹지
		G <sub>134</sub>	역사공원	유구한 역사, 높은 저명도, 전통 조원예술 구현 및 문화재 보호 기관의 심의를 득한 원림
		G <sub>135</sub>	풍경명승공원	도시 건설용지 범위 내 위치, 문화재·고적 및 풍경명승지 위주로 형성되어 도시공원 기능을 구비한 녹지
		G <sub>136</sub>	위락(遊樂)공원	대형 위락시설 구비, 단독 설치, 생태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녹지
		G <sub>137</sub>	기타 전문공원	상기한 각종 전문공원 외 특정 주제내용을 구비한 녹지, 조각원·분재원·체육공원·기념 공원 등 포함
G <sub>14</sub>		대상(帶狀)공원	도시도로변, 성벽, 수변 등, 일정한 유희·휴게시설이 있는 좁고 긴 띠모양 녹지	
G <sub>15</sub>		가로변녹지	도시 도로용지 외에 위치, 비교적 독자적으로 조성된 녹지, 가로광장녹지, 가로변 소형 녹화용지 등이 포함	

(표 3. 계속)

G <sub>2</sub>		생산녹지	도시녹화를 위해 제공되는 묘목, 화초, 종자를 생산하는 각종 묘포장을 갖춘 포지
G <sub>3</sub>		방호녹지	도시 내 위생, 격리 및 안전 방호기능의 녹지. 위생격리대, 도로방호녹지대, 도시고압선대 녹지, 방풍림, 도시 조단(組團)격리대 등이 포함
G <sub>4</sub>		부속녹지	도시건설용지 중 녹지 외 각종 용지 중 부속녹화용지, 거주용지, 공공시설용지, 공업용지, 창고용지, 대외교통용지, 도로광장용지, 시정(市政)시설용지 및 특수용지 등에 조성된 녹지를 포함
	G <sub>41</sub>	거주녹지	도시 거주용지 내 공동체공원 이외의 녹지. 조단(組團)녹지, 주택가녹지, 부설공공녹지, 소구(小區)도로녹지 등을 포함
	G <sub>42</sub>	공공시설녹지	공공시설용지 내 녹지
	G <sub>43</sub>	공업녹지	공업용지 내 녹지
	G <sub>44</sub>	창고녹지	창고용지 내 녹지
	G <sub>45</sub>	대외교통녹지	대외교통용지 내 녹지
	G <sub>46</sub>	도로녹지	도로광장용지 내 녹지. 보행로녹지대, 보차분리녹지대, 교통도 녹지, 교통광장 및 정차장 녹지 등을 포함
	G <sub>47</sub>	시정(市政)시설녹지	시정 공용시설용지 내 녹지
	G <sub>48</sub>	특수녹지	특수용지 내 녹지
G <sub>5</sub>		기타녹지	도시생태환경의 질과 양, 주민레저생활, 도시경관 및 생물다양성보호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녹지. 풍경명승구, 수원보호구, 교외공원, 삼림공원, 자연보호구, 풍경림, 도시녹화격리대, 야생동식물원, 습지, 쓰레기매립장 회복녹지 등을 포함

자료: 중국 건설부, 2002, 필자 제작성

2) 한중 도시공원 종류 비교

한국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분류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독립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중국은 관련 독립법 없이 국무원에서 제정한 '도시녹화조례'와 각 도시의 공원조례를 통해 공원녹지를 계획·관리하고 있으

며, 도시공원의 종류는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중국 도시공원의 종류는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한국은 공원과 녹지를 분리하여 공원이 독립되어 분류되어 있으나, 중국은 공원녹지가 통합되어 공원녹지에 공원이 포함된 것이 양국의 차이점이

표 4. 한중 도시공원 종류 및 속성 비교

-	한국		중국*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도시공원 종류	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종합공원	전시(全市)공원, 구역공원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공동체공원	거주구공원
			전문공원	아동공원, 풍경명승공원, 위락공원, 기타전문공원(체육공원, 기념공원)
			대상(帶狀)공원	-
공원녹지 개념	공원과 녹지의 분리 ⇒ 공원이 독립		공원과 녹지의 통합 ⇒ 공원녹지에 공원이 포함	
근거 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城市)녹지 분류 표준(표준 번호: CJJ/T 85-2002) 표2-1	

\*: 중국의 공동체 공원 중의 소구역원(小區遊園), 전문공원 중의 동물원, 식물원, 역사명원은 공원의 종류에서 제외함.

표 5. 한중 동일·유사 도시공원 종류와 그 기능

-	한국		중국	
	공원 명칭	기능/주제	공원 명칭	기능/주제
동일 명칭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아동공원	소년·아동에게 유희 및 과학교육 제공, 문화·체육 활동 보장
	체육공원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신체와 정신 배양	체육공원	전문공원의 일종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내용 또는 형식을 구비
유사 명칭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	거주구공원	거주구 주민에 대한 서비스 활동을 위한 내용과 시설 구비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한 도시민의 휴식·교육의 장소	풍경명승공원	도시 건설용지 범위 내 위치한 문화재·고적 및 풍경명승지 위주로 형성된 도시공원
근거 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城市)녹지 분류 표준	

다(표 4 참조). 공원의 성격상 한중 동일 종류는 어린이공원(아동공원)과 체육공원, 유사 공원은 한국의 근린공원과 중국의 거주구공원, 한국의 역사공원과 중국의 풍경명성공원 등이 있으며, 이들 공원의 기능 및 주제에 대해 양국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 2. 중국의 공동주택 내 녹지 설치

### 1) 법규상 녹지 관련 용어 정의

중국의 공동주택 내 도시녹지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시거주구계획설계규범'(이하 규범이라 함) 제2장의 용어 해설 중 거주구용지, 주택용지 및 공공서비스시설용지 등처럼 용어의 정의에 '녹지'가 포함된 것과 공공녹지와 녹지율처럼 용어 정의에 '녹지'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에 '녹지'가 포함된 용어를 정의하면 표 6과 같다(규범 2.0.4~2.0.6, 2.0.12, 2.0.32). 한국은 옥상조경 시 일정 면적 즉,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에 포함시켜 녹지율 계산에 포함시키지만(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중국에서는 주민 출입이 용이한 지하나 반지하 건물의 옥상 외에는 옥상조경의 조경면적을 녹지율 산입 요소에서 일체 제외시키고 있다.

### 2) 녹지 설치 요구 사항

#### (1) 거주구 계획 시 녹지 요구 사항

도시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환경 확보책의 일환으로 거주구 계획·설계 시 녹지를 요구하는 규정은 표 7과 같다(규범 1.0.5.3, 4.0.1, 4.0.2.5, 5.0.1, 5.0.3.5). 거주구 종류별 호수와 인구의 규모가 정해져 있고, 의무적 공공녹지 확보율은 거주구가 7.5~18%, 소구(小區)가 5~15%, 조단(組團)이 3~6% 등으로 하한치뿐만 아니라, 상한치까지<sup>1)</sup> 명시되어 있다(규범 1.0.3, 3.0.2)(표 8 참조).

표 6. 중국 '도시거주구계획설계규범' 중 '녹지' 관련 용어

용어(기호)	정의	
I <sup>a</sup>	거주구용지(R)	4개 용지(주택용지, 공공건축용지, 도로용지, 공공녹지)로 구성된 거주구용지 중 공공녹지가 포함
	주택용지(R01)	주택 간 녹지 포함
	공공서비스시설용지(R02)	일반적 공공건축용지로서 녹지가 포함
II <sup>b</sup>	공공녹지(R04)	일조량 확보, 유희·휴게활동 시설의 적절 배치, 거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집중녹지 제공, 거주구공원, 어린이놀이터, 조단(組團)녹지와 기타 덩이형 대상(帶狀)녹지 등의 적절 배치
	녹지율	거주구용지 면적에 대한 거주구용지 범위 내 각종 녹지면적의 비율(%) - 녹지율 산정에 포함된 녹지: 1.공공녹지, 주택기녹지, 공공서비스시설 소속 녹지 및 도로녹지(도로경계선 내 녹지), 2.현장 식수 녹화를 위한 복토요구를 만족시키고, 거주민 출입이 편리한 지하 또는 반지하 건축물의 옥상녹지 - 녹지율 산정에 비포함된 녹지: 1.기타 옥상녹지, 2.일광을 위한 인공녹지(빨래건조대, 흡연·휴식 등을 위한 건물 층간 녹지 등)

<sup>a</sup>: 용어 정의에 '녹지' 포함, <sup>b</sup>: 용어 정의에 '녹지' 포함+용어 자체에 '녹지' 포함.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2002, 필자 제작성

표 7. 중국의 거주구 및 주택건축 계획 시 녹지 요구 사항

항목		요구 사항	
거주구	계획·설계 시 기본원칙	종합 고려 대상 항목에 해당 도시의 식피 상태 포함	
	계획구성	종합 고려 사항	녹지체계 고려
		인간관계	녹지와 인간 활동과의 상관 관계 고려
주택건축	종합 고려 사항	녹지 포함	
	노년층 배려	노년층 거주 건축물(요양원, 탁로스 경로당 등): 공공녹지와 가깝게 배치	

표 8. 중국 거주구 종류별 규모와 의무적 공공녹지 확보율

-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호수(천호)	10~16	3~5	0.3~1
인구(천인)	30~50	10~15	1~3
공공녹지(R04) 확보율(%)*	7.5~18	5~15	3~6

\*: 녹지확보율=녹지면적/거주구용지면적(%)

### (2) 녹지 면적 인정 범위

녹지 면적으로 확정되기 위하여 인정되는 녹지 종류별 부지의 성격과 시·종점에 대한 경계 범위는 표 9와 같다. 주택지 간 녹지가 건물 벽체에 접할 경우 벽체로부터 1.5m 이격된 녹지선을 녹지 최외곽 경계선으로 인정하며, 정원식 조단(組團) 녹지의 경우, 추가로 녹지와 주택간소로·조단로·소구로 노변과 연결할 경우, 노변으로부터 1.0m 이격된 녹지선을 녹지 최외곽 경계선으로 인정한다.

### 3) 녹지 설치 규정

#### (1) 기본 방향 및 규정 준수

거주구 내 주민 출입이 용이한 지하나 반지하 건물의 옥상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하며(규범 7.0.1), 녹지 계획 시 계획 범위 내의 기존 수목과 녹지는 반드시 보존하고 이용하여야 한다(규범 7.0.3).

표 9. 중국의 녹지 면적 확정을 위한 인정 범위

녹지 종류		녹지 면적 인정 범위
주택지 간 녹지		녹지의 시·종점 외곽 경계선: 규범 부록 A 제A.0.2조 규정 준수 1. 주택 간 소로 조단(組團)로 및 소구(小區)로 노변, 소구로 보행로의 보도변, 거주구로와 도시도로의 도로경계선 등과 접하는 녹지 경계선 2. 녹지가 건물 벽체에 접할 경우, 벽체로부터 1.5m 이격된 녹지 경계선 3. 기타 녹지를 둘러싼 담장선
도로 녹지		도로경계선 이내 계획된 녹지
정원식 조단(組團) 녹지	공동 사항	녹지의 시·종점 외곽 경계선: 규범 부록 A 제A.0.3조 규정 준수 1. 녹지와 주택간소로·조단로·소구로 노변과 연결할 경우, 노변으로부터 1.0m 이격된 녹지 경계선 2. 녹지가 건물 벽체에 접할 경우, 벽체로부터 1.5m 이격된 녹지 경계선 3. 소구로 보행로의 보도변, 도시도로와 거주구로 도로의 도로경계선
	개방형 정원식 조단(組團) 녹지	표 11상의 해당 면적 요구 조건 충족 1. 최소한 녹지의 한쪽 면이, ① 소구로 쪽으로 향하거나 ② 조단로를 향할 경우, 조단로 마주편 건축선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2. 녹지의 주출입구: 개방된 도로 쪽에 위치해야 함(기타 규범 부록 A 제A.0.4조 규정 준수)
덩이형·대상(帶狀) 녹지		정원식 조단(組團)녹지와 동일

거주구 내 녹지는 첫째, 녹화 가능한 모든 용지는 녹화하여야 하며, 특히 수직녹화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택지 간의 녹지는 특히 세심하게 계획·설계하여야 하며, 택지 간 녹지면적 계산 방법은 관련 규정(규범 11.0.2.4, 후술)에 부합하여야 한다. 셋째, 녹지율은 신거주구 건설 시는 30% 이상, 구거주구 재 정비 시는 25% 이상으로 차별화 한다(규범 7.0.2).

각종 용지의 적정 경사도 중 녹지 경사도는 0.5~1.0%이어야 한다(규범 9.0.2.2).

(2) 중심녹지 설치

거주구공원, 어린이공원(小遊園), 조단(組團)녹지 등 각급 중심녹지의 설치 내용, 요구사항 및 최소 규모에 관한 규정은 표 10과 같으며, 이 표의 설치 내용은 구체적 조건을 선별해서 채택한다. 공간 기능을 거주구공원은 '명확'하게, 어린이공원은 '일정'하게로 구분하여 구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두 기능의 구체적인 특성에 관한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소한 공원의 한 변이 상응하는 등급 즉, 도로 폭으로 구별되는 거주구공원급, 어린이공원급 및 조단녹지급 도로와 인접해야 하고, 수면을 포함하는 녹화면적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주민 휴식·산책 및 왕래가 편리한 확 트인 개방 공간을 확보하고, 각 공간 구역은 산울타리 또는 시야가 뚫린(通透) 담장·난간에 의해 분리되어야 한다.

표 10. 중국의 각급 중심녹지 설치 규정

중심녹지 명칭	설치 내용	공간구성 요구사항	최소 규모(m <sup>2</sup> )
거주구공원	화·목·초본류 식재지, 화단 수면(水面), 정자(첼터), 조각품, 매점·찻집, 노인·유아시설, 주차장과 포장지면 등	명확한 기능 구분	100
어린이공원(小遊園)	화·목·초본류 식재지, 조각품, 아동시설과 포장지면 등	일정한 기능 구분	40
조단(組團)녹지	화·목·초본류 식재지, 탁자·의자, 간이 이동시설 등	융통성·원활성	4

조단(組團)녹지는 일조음영선 밖의 일정 녹지 면적의 확보 규정으로 녹지 면적의 1/3 이상을 건축물에 의한 표준 일조음영선 범위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편리한 아동유회시설과 적절한 성인 놀이·휴식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단(組團)녹지 중 정원식 조단(組團)녹지는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하여 다층·고층 건물별로 남·북측 건물 간격과 필요한 조단(組團)녹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표 11 참조), 녹지 면적 계산법은 규범 제11장의 관련 규정(표 9 참조)에 부합해야 한다.

표 11. 중국의 정원식 조단(組團)녹지 설치 규정

폐쇄형 녹지 <sup>a</sup>		개방형 녹지 <sup>b</sup>	
남측 다층건물 <sup>c</sup>	남측 고층건물 <sup>d</sup>	남측 다층건물	남측 고층건물
$L \geq 1.5L_2$ $L \geq 30m$	$L \geq 1.5L_2$ $L \geq 50m$	$L \geq 1.5L_2$ $L \geq 30m$	$L \geq 1.5L_2$ $L \geq 50m$
$S_1 \geq 800m^2$	$S_1 \geq 1,800m^2$	$S_1 \geq 500m^2$	$S_1 \geq 1,200m^2$
$S_2 \geq 1,000m^2$	$S_2 \geq 2,000m^2$	$S_2 \geq 600m^2$	$S_2 \geq 1,400m^2$

주: ① L: 남북 두 건물의 정면 간격(m)  
L<sub>2</sub>: 해당 주택의 표준 일조 간격(m)  
S<sub>1</sub>: 북측이 다층건물일 경우 조단(組團)녹지(m<sup>2</sup>)  
S<sub>2</sub>: 북측이 고층건물일 경우 조단(組團)녹지(m<sup>2</sup>)  
② 개방형 정원식 조단(組團)녹지: 규범 부록 A 제A.0.4조 규정에 부합

<sup>a</sup>: 건물로 위요된 녹지, <sup>b</sup>: 도로와 접한 녹지, <sup>c</sup>: 6층 이하 건물, <sup>d</sup>: 7층 이상 건물



(3) 공공녹지 설치

① 공공녹지 지표

거주구 내 공공녹지의 1인당 확보 면적인 총 지표는 조단(組團) 0.5m<sup>2</sup>/인 이상, 조단을 포함하는 소구(小區) 1m<sup>2</sup>/인 이상, 소구·조단을 포함하는 거주구 1.5m<sup>2</sup>/인 이상 등, 거주 인구 규모에 따라 구별하여 달성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 구역에 대한 재정비 시에는 위 지표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규정치보다 70% 이하로 낮출 수는 없다. 또한 공공녹지는 주거계획 공간 구성 형식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안배하여야 하고, 융통성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설치 기준

공공녹지의 위치와 규모는 계획용지 주변의 타 도시급 공공녹지의 공간 구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확정한다. 덩이형 또는 띠모양인 대상(帶狀) 공공녹지는 8m 이상의 폭과 1개소당 최소 400m<sup>2</sup>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심녹지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공원의 한 변이 상응하는 등급의 도로와 인접해야 하고, 수면을 포함하는 녹화면적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주민 휴식·산책 및 왕래가 편리한 확 트인 개방 공간을 확보하고, 각 공간 구역은 산울타리 또는 시야가 뚫린 담장·난간에 의해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녹지 면적의 1/3 이상을 건축물에 의한 표준 일조음영선 범위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관선 설치 시 녹지 고려

급수관, 우수관, 우수관, 전기·통신관 등의 각종 지하관선은 공공녹지와 정원녹지를 횡단·관통해서는 안 된다. 지하관선과 주변 녹화수목과의 최소 수평 이격거리는 표 12와 같으며, 교목 1.5m, 관목 1.0m인 전신 파이프와 교목 1.5m, 관목 1.2m인 소방전 이외에는 교목과 관목의 이격거리 차이가 없다.

(5) 공공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

공공서비스시설의 종류별 서비스 내용과 녹지 설치 규정을

표 13. 중국의 공공서비스시설 중 녹지 설치 규정

분류	항목 명칭	서비스 내용	녹지 설치 규정
교육	탁아소	3세 이하 유아의 보호와 교육	공공녹지 근처에 설치
문화체육	문화활동센터	소형도서관, 과학보급·지식선전 및 교육, 영화촬영소, TV방송국, 무도장, 연예장, 구기장, 장기·바둑활동장, 과학기술활동, 각종 예술훈련장, 청소년·노인학습활동 장소 및 건물	중심녹지를 고려한 공간 선정 또는 중심녹지 근처에 배치
	문화활동사무소	출판물 열람, 서화, 레크리에이션, 건강, 음악감상, 찾집 등 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주요 활동	
	주민건강시설	농구·배구 및 소형 구기 장소, 아동·노인 활동 장소와 기타 약식 운동시설	녹지를 고려한 배치
공동체 서비스	노인위탁소(탁로소)	주간 노인 위탁(음식, 레크리에이션, 건강, 의료보건 등)	집중녹지 근처에 배치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2002. 필자 제작

표 12. 중국의 지하관선(및 기타시설)과 녹화수목 간 최소 수평 이격거리

관선 명칭	최소 수평 이격거리(m)	
	교목 중심까지 거리	관목 중심까지 거리
급수관, 급수정	1.5	1.5
우수관, 우수관, 우수 시추정	1.5	1.5
가스관, 가스 시추정	1.2	1.2
전기·전신 케이블	1.0	1.0
전신 파이프	1.5	1.0
열에너지관	1.5	1.5
지상노출기둥(중심)	2.0	2.0
소방전	1.5	1.2
도로경계석 가장자리	0.5	0.5

살펴보면 표 13과 같으며(규범 부록 표 A.0.3에서 발췌 정리), 국내의 경로당과는 구별되는 주간 노인 위탁소인 탁로소가 집중녹지 근처에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내 대비 중국 법제도의 특이점 분석 및 고찰

1) 특이점 분석

이상의 도시녹지 관련 중국 법령 중에는 국내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내용들이 다수 존재한다. 법규 적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수적 법령답게 선언적이면서도 구체적·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됨으로써 녹지 행정의 편의성 고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법규와 비교해 볼 때 중국 법규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점들을 분석 기준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특이점을 분석하였다(표 14 참조). 국내의 경우, 공동주택을 그 규모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4종류로 구분(건축법시행령 별표1)하지만, 주택단지의 세분 규정은 없다(주택법 제2조 제6호). 그러나 중국은 주택단지인 거주구를 호수, 인구에 따라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등 3종류로 구분하여 각종 규제를 차별화시키고 있다. 거주구 조성 시 신거주

표 14. 국내 규정 대비 중국의 도시녹지 법제도의 특이점

분석 기준	관련 규정	특이점*
거주구 세분	거주구 3종류: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호수, 인구에 따른 3종류로의 구분, 각 거주구별 공공녹지 확보율 규정
신·구 거주구별 녹지율 규정	신거주구 건설: 30% 이상 구거주구 재정비: 25% 이상	신·구 거주구별 차등화: 구거주구 완화
녹지 경사도	0.5~1.0%	녹지 적정 경사도 제시
중심녹지(거주구공원, 어린이공원, 조단녹지)	- 한 변 이상이 인접 도로와 접해야 함. - 녹화면적: 전체 면적의 70% 이상 - 개방적 공간 구성: 경계물은 산울타리나 투시형 구조물로 조성 - 유형별 최소 면적 제시 - 공간 기능 구분: 명확/일정 기능으로 구분	공간 구성시의 의무적 조치 사항 및 명확한 기능과 일정한 기능을 구분하여 명시
조단녹지	- 일조음영선: 녹지 면적의 1/3 이상을 건축물에 의한 표준 일조음영선 범위 외의 지역에 설치 -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구분하여 규정 - 남측 다층건물과 남측 고층건물로 구분하여 주택 간 간격과 녹지 확보 면적을 규정	- 일조음영선 밖 일정 녹지 면적 확보 - 폐쇄형·개방형 녹지로 구분하여 인동간격 및 면적 확보치를 명시
공공녹지	- 일조음영선: 녹지 면적의 1/3 이상을 건축물에 의한 표준 일조음영선 범위 외의 지역에 설치 - 공공녹지 지표: 거주구별 1인당 녹지 확보 면적 규정 - 노후구역에 대한 공공녹지 지표: 70%까지 완화 - 덩이형과 대상(帶狀) 공공녹지: 최소폭과 개소당 최소면적 규정	- 일조음영선 밖 일정 녹지 면적 확보 - 녹지 확보 면적과 최소폭 규정
지하관선	관선 종류별 녹화수목 간 최소 수평 이격거리	교목과 관목의 차이가 없음(전신파이프와 소방전은 예외)
녹지면적 확정	녹지 종류별 녹지면적 인정 범위 명시: 건물벽체 1.5m 이격, 노변 1.0m 이격	면적 인정 녹지 외곽 범위 명시
공공서비스시설	교육, 문화체육, 공동체서비스 시설의 녹지 설치 규정	공공서비스시설에 대한 별도의 녹지 설치 기준 명시

\*: 국내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

구 건설과 구거주구 재정비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녹지율 확보치를 30%에서 25%로 완화하고 있으며, 녹지 조성시의 0.5~1.0%인 적정 경사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중심녹지 조성 시의 도로 인접, 녹화면적, 공간 개방 등의 구체적인 공간구성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그 중 조단녹지는 별도로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하여 인동간격 및 면적 확보치를 명시하고 있다. 공공녹지의 주민 1인당 녹지 면적 확보를 위한 지표와 최소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노후구역은 그 지표를 70%까지 완화하고 있다. 지하관선 종류별로 녹화수목 간 최소 수평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특이하게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교목과 관목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녹지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중점 범위가 인접하는 건물 벽체와 노변에 따라 차등화 되고 있는 바, 건물 벽체로부터 1.5m, 노변으로부터는 1.0m 이격한 지점부터 면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시설에 대한 별도의 녹지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도 특이하다.

## 2) 고찰

국내 법제도와 비교하여 중국 법령에만 존재하는 규정들의 장·단점 분석 및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적, 부정적 가치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수적이다. 주택건축 시 노년층 거주 건

물을 주변의 공공녹지와 가깝게 배치하도록 한 규정은 노년층 배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시책을 시사하고 있고, 지하나 반지하 건물 옥상의 녹지 조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규정 역시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 환경 개선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부류의 규정은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검토 후 채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겠다. 그 외 표 14에서 밝힌 제반 규정 즉, 신거주구 건설과 구거주구 재정비 시의 녹지율 확보 차등화, 녹지 경사도,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되는 조단녹지 개념 도입 등의 문제는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과제로서, 한국과 중국의 체제와 문화의 이질감을 고려한 각 항목별 전문가 설문 조사 등에 의한 객관적 타당성 조사 및 통계 분석을 거친 후, 국내 도입 여부의 가능, 불가능, 조건부 가능 등의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국의 도시녹지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 설치의 기준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다르다. 따라서 하위 시설에 대한 각종 구분과 규제책들이 국내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국내에 없는 낮은 규정으로서 상당한 상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위상에 해당하는 중국 법규로는 각 시별 '도시공원관리조례'를 들 수 있으며,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공원의 종류는 하위 법규인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옥상조경 시 일정 면적을 조경의무면적으로 인정하여 녹지율 계산에 포함시키는 한국의 경우와 달리 중국에서는 주민 출입이 용이한 지하나 반지하 건물의 옥상 외에는 옥상조경의 조경면적을 도시녹지의 녹지율 산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거주구 계획·설계 시의 녹지 요구 조항과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등 거주구 종류별 의무적 공공녹지 확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거주구 내 녹지계획 시 녹지계통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존 수목과 녹지의 보존·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은 개발도상국의 양적 식재 개념이 아닌 선진국의 질적 식재 개념의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녹지율은 구거주구 재정비시의 경우 신 거주구 건설시보다 완화시켜 주고 있으며, 특이하게 녹지 경사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거주구공원, 어린이공원(小遊園), 조단(組團)녹지 등 각급 중심녹지의 설치 내용, 요구사항 및 최소 면적 규모가 명시되어 있고, 특히 조단녹지의 일종인 정원식 조단녹지는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하여 다층·고층 건물별로 남·북측 건물 간격과 녹지 면적 확보치를 밝히고 있으며, 녹지 면적 계산법이 별도의 규범에 제시되어 있다.

넷째, 거주구별로 달성해야 할 거주구 내 공공녹지의 1인당 확보 면적인 총 지표가 정해져 있고, 이 경우 노후 구역 재정비시에는 일정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녹지의 위치와 규모, 최소폭, 개소당 최소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고, 도로와의 인접, 전체 면적 대비 녹화 면적비, 개방적 공간 확보, 일조음영선 범위 등 공간 배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지하관선 설치 시의 녹지 고려 사항으로 지하관선과

주변 녹화수목과의 최소 수평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고, 공공 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를 위해 종류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녹지 설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중국 법규의 특이점 분석에서 살펴본 각종 규정은 국내 규정과 비교해서 다소 또는 절대적으로 이질감이 보일 수도 있으나, 향후 항목별 정밀 연구를 통해 국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는 그러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조경 법제도의 국제화 진입의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조경 계획·설계 및 시공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상호 참여가 예측되는 양국 간의 교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자연과학자인 한·중 조경가들과 사회과학자인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동참하는 국가 차원의 총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 1. 국내의 경우에는 일례로 대지안의 조경 시 조경의무면적이 대지면적의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만 명기되어 있고, 상한치 규정은 없다(건축법 제42조, 각 지자체 조례 중 대지안의 조경 조항). 거주계획 시의 양적 규모에 구간 범위가 제시된 점은 국내와 동일하나, 하한치를 규정하는 조경면적률, 녹지율, 식피율 등과 상한치를 규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등과 같이 상·하한치 중 어느 한 쪽만 명시하는 국내의 양적 비율치 규제책과는 달리 중국의 경우 녹지율 확보책처럼 양적 비율치에 상·하한치 모두의 구간 범위가 명시된 점이 특이하다.

### 인용문헌

1. 강명수(2005) 일본의 최신 녹지정책. 한국조경학회지 33(2): 122-129.
2. 곡소곤(2008)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시 공원녹지체계 조성 연구: 중국 북경시를 사례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북경시(2002) 도시(城市)녹지 분류 표준. 북경시 북임지 원림계획설계원 유한공사.
4. 사신우(2010) 중국 주거단지계획 제도 및 요소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신익순(1997) 국내·외 조경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이양주(2007) 중국의 공원녹지정책 사례연구. 정경연구 2007(1): 1-148.
7. 장지엔웨이(2012) 도시공원녹지현황 및 시민의식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 청주시와 예타이시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조홍하, 강태호(2011) 한국과 중국의 옥상녹화 제도 비교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4): 11-17.
9. 중국 건설부(2002) 도시(城市)녹지 분류 표준.
10. 중화인민공화국(2002) 도시거주구계획설계규범(城市居住區規劃設計規範).
11. 채문의(2009) 상해시 포동신구 공원녹지체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Lu Bo(2011) 경관생태적 접근을 통한 도시녹지 네트워크 계획: 중국 하얼빈시를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 고 접 수 일: 2013년 4월 10일  
 심 사 일: 2013년 4월 25일(1차)  
 2013년 5월 7일(2차)  
 2013년 5월 21일(3차)  
 게재 확정 일: 2013년 5월 24일  
 3인익명 심사필